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내역
경상남도베트남 참전기념사업회 차량구입	베트남참전 기념사업회	차량	스타 렉스	2013	30	1	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10 경남보훈회관	신규취득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지부 차량구입	특수임무 유공자회	차량	스타 렉스	2013	30	1	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10 경남보훈회관	신규취득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 차량구입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차량	스타 렉스	2014	30	1	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10 경남보훈회관	신규취득
경남광역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사업	경남광역 푸드뱅크	차량	포터2	2015	22	1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노후 대체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